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의 현황 및 향후과제



김 중 배

환경부 환경감시담당관실 서기관

☎ 02-2110-6537, kim12@me.go.kr

〈필자약력〉

- 충남대 화학과
- 연세대 대학원(공학석사)
- '94.5 ~ '96.1 : 금강환경관리청 환경평가과장
- '96.2 ~ '96.8 : 환경부 평가분석과
- '96.9 ~ '98.8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파견
- '98.9 ~ '02.8 : 환경부 산업폐수과
- '02.9 ~ 현재 : 환경부 환경감시담당관실

1. 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는 대기, 수질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90년대에 일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환경규제에 성실히 따르는 업체에게는 자율권을 주는 대신 점검기관은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91,000여개에 달하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제한된 행정력만으로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보다는 스스로 실시하는 자율점검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도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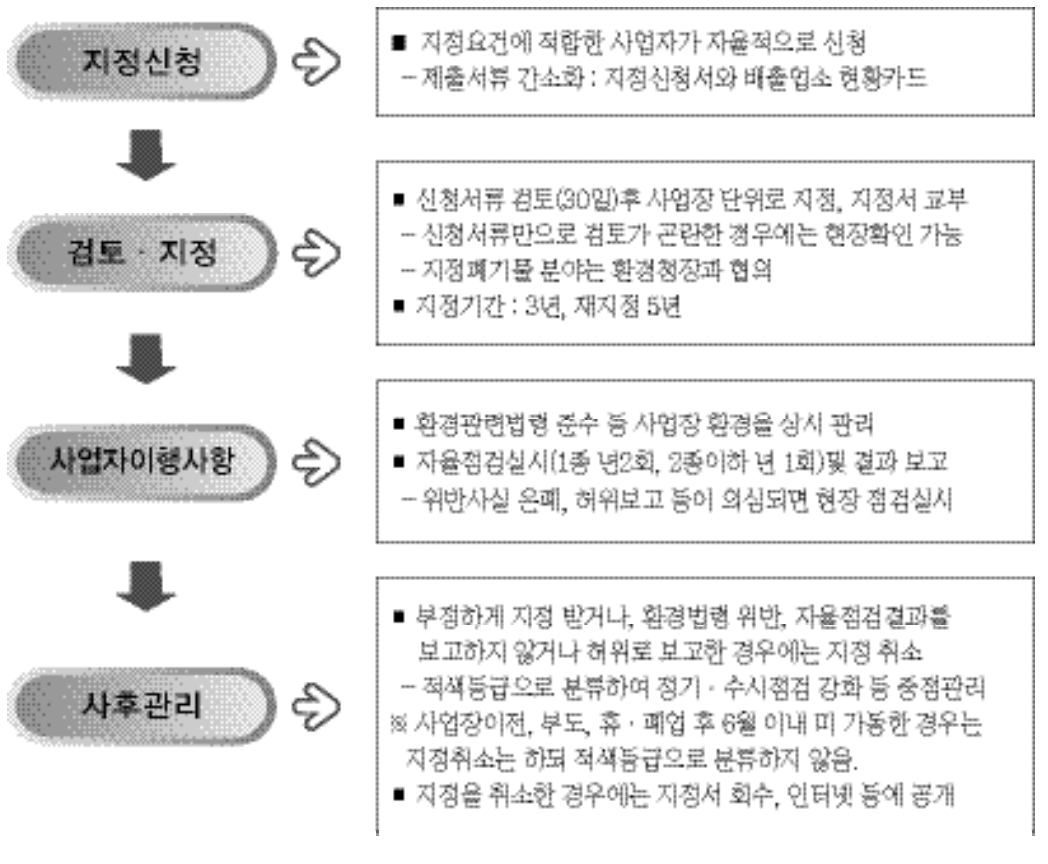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원격자동감시체제(TMS)가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거나 단순 보일러 시설만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 등이어야 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상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각종 환경법규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1~2회 점검기관에 보고하게 된다.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

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바로 적색등급 사업장으로 분류하

여 수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하게 되며, 지정 취소 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을 제한하게 된다.

3.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 흐름도



4. 주요 추진실적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는 2004년 9월부터 도입·시행중이며, 그간 자율점검제도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동 제도에 대한 도입취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지자체의 자율점검업소 지정·운영실태 현지확인 등을 통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독려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11월

말 현재 지정대상사업장 7,809개소중 2,505개소가 지정되어 32.1%의 지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5. 향후과제

자율점검업소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점검에 따르는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관련시설의 결합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점검기관의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면제로 생기는 여력을 문제업소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기업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점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신뢰와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는 부수적 효과도 예상된다.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청색등급) 모두에 대해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사업장

구 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 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은 사업장 2.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3.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5.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